

「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3월 1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3월 25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미비로 인해 지원 조건이 좋은 타 자치단체로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군 고용창출 및 인구 정책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
-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 ~ 제3조)
-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범위(안 제4조)
-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 및 기능(안 제5조 ~ 제8조)
  - 협의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
  - 협의회 구성
  -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
  -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

-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(안 제9조 ~ 제12조)
  -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
  - 직접생산 물품의 수의계약
  - 입주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
  -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
- 농공단지 업무 담당공무원 포상·면책 규정(안 제1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공 단지를 활성화 시키고,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입주 기업체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,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, 단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으로, 조례안의 형식과 조문작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에서 지정·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농공단지"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평창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.
2. "농공단지의 관리"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, 용지 및 시설의 매각·임대, 유지·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관리업무)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
2. 공공시설(상·하수도, 도로, 가로등, 소화전, 통신관로, 울타리, 공동이용관리사, 그 밖의 시설물)의 설치
3.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·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
4.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비용 징수
5.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
6.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

제5조(협의회 운영 및 기능)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.

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

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인력, 자금,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
2.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
3.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·강연회·홍보활동 등 행사개최
4.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

제6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.

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 관리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중 농공단지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.

③ 협의회는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④ 관리사무소의 설치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(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)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,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.

제8조(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) 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.

제9조(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)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"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"을 수립하여

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1. 근로자 아파트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2. 용수공급사업, 산업재해 예방사업, 환경오염 방지사업
3. 교육·연수사업
4.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·외 판로 지원 사업
5.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
6.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7.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때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10조(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) ① 군수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제11조(입주기업체 지원)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 물류보조금: 생산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
2. 인증 지원보조금: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
3.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: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임의 50퍼센트 범위 내
4.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, 기간 등 세부 지원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)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(진입도로를 포함한다), 상·하수도, 녹지,

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(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)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 및 면책) 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, 단체,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.

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「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을 적용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